

건양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(4-1-11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정관 제86조(부설연구소), 직제 규정 제26조(부설연구소)에 의하여 설립된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학교육 관련 학술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
2. 공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
3.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4. 기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사업

제3조(소재지)센터는 충남 논산 내동 대학로 121번지 건양대학교에 둔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센터장)① 센터장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며 행정팀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
제5조(행정팀)①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둔다.

② 행정팀에는 연구원, 직원,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연구원 및 행정조교를 임명할 수 있으며,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.

제3장 위 원 회

제6조(위원회)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2. 혁신위원회
3. 공학인증위원회

4. 평가위원회
5. 산학협력위원회

② 센터의 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는 대학보직자, 의료공과대학장, 센터장, 협력기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2. 혁신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센터장 추천으로 구성한다.
3. 산학협력위원회는 산업체 인사를 1/2이상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센터장 추천으로 구성한다.
4. 공학인증위원회는 인증프로그램 PD를 중심으로 구성한다.

③ 센터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제7조(기능) 센터의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운영위원회
 - 가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
 - 나. 센터의 규정 등의 제(개)정 심의
 - 다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2. 혁신 위원회
 - 가.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- 나. 센터의 규정 제(개)정에 관한 사항
 - 다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라.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- 마. 타사업, 타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
 - 바. 기타 센터 세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3. 공학인증 위원회
 - 가. 공학인증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공학인증프로그램의 규정 제(개)정에 관한 사항
 - 다. 공학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라. 기타 공학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주요사항
4. 평가위원회
 - 가. 사업평가방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세부사업별 평가에 관한 사항
 - 다. 기타 센터 대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위원회
 - 가.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 - 나.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다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장 재 정

제8조(재정) 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
2. 정부기관의 사업지원금 및 연구지원금
3. 외부기관의 기부금
4. 기타 수익금

제9조(재정의 운용)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센터의 운영경비 집행은 교비 집행지침에 따른다. 단, 공학교육혁신사업비의 집행은 공학교육혁신사업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해산)이 센터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

부 칙

(제정)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본 규정은 200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본 규정은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1차년도 사업

(2012년도)에도 적용할 수 있다.